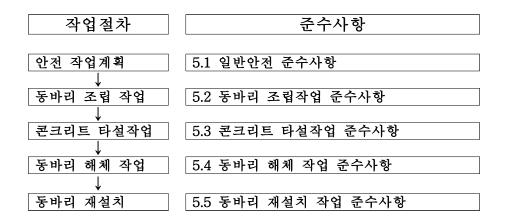
- (바) "재사용" 이란 한 번 이상 사용한 것과 한 번도 사용하지 신품이라도 1년 이 상 보관된 것을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4.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안전작업 절차

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작업은 <그림 1>과 같이 작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>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안전작업절차

## 5.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조립·해체 안전작업

## 5.1 일반안전사항

- (1)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재료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33호(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)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재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(건설공사의 품질관리)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